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第12條 (委員會의 운영 등) 이 법에 規定된 것 외에 委員會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3條 (職員의 身分保障) 委員會의 職員은 刑의 宣告·懲戒處分 또는 委員會의 規程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退職·休職·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p>	<p>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p> <p>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p> <p>제11조(특별조사과) ①특별조사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②특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위원장이 특별히 명하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p> <p>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p> <p>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p> <p>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p> <p>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p> <p>③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 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위원회는 소관사무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p>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第14條 (諮問委員會) ①委員會의 業務遂行에 필요한 사항을 諮問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諮問委員會를 둘 수 있다.</p> <p>②諮問委員會의 委員은 疑問死 관련 遺族 및 民間團體의 代表者, 委員會의 業務와 관련된 國家機關의 公務員, 疑問死 事件의 調査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 가운데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위촉한다.</p> <p>③諮問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의 規程으로 정한다.</p> <p>第15條 (秘密漏泄의 금지) 委員會의 委員·諮問委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業務上 지득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16條 (資格詐稱의 금지) 누구든지 委員會의 委員·諮問委員 또는 職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權限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17條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委員會가 아닌 者는 疑問死真相糾明委員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第18條 (陳情人의 適格 등) ①疑問死한 者와 親族關係에 있는 者나 疑問死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者는 委員會에 陳情할 수 있다. 이 경우 親族關係에 있는 者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者의 범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陳情은 2000年 12月 31日까지 하여야 한다.</p> <p>第19條 (陳情의 방식)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로 陳情하여야 한다. 다만, 文書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口述로 할 수 있다.</p> <p>1. 陳情人의 姓名과 住所</p> <p>2. 陳情의 취지와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p>	<p>제14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법 제18조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며,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 함은 의문사한 자와 아는 자 등으로서 의문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경험하였거나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한다.</p> <p>제15조(진정의 방식 등) ①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진정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행정절차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p>第20條 (陳情의 却下) ①委員會는 陳情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調査하지 아니하고 却下하여야 한다.</p> <p>1. 陳情이 委員會의 調査對象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陳情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委員會는 調査를 개시한 후에도 그 陳情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陳情을 却下하여야 한다.</p>	<p>③진정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진정인이 구술로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p> <p>④위원회는 의문사 관련자들의 진정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의 절차나 방식 등을 홍보할 수 있다.</p> <p>제16조(진정의 이송) 진정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第21條 (調査의 개시) ①委員會는 陳情이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p> <p>②委員會는 疑問死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p>	<p>제17조(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진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거나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18조(결정 등의 통지) “법 제27조란에 기재”</p>
<p>第22條 (調査의 방법) ①委員會는 調査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p> <p>1. 陳情人, 참고인, 被陳情人에 대한 陳述書 제출요구</p> <p>2. 陳情人, 참고인, 被陳情人의 출석 요구 및 陳述聽取</p> <p>3. 鑑定人的 지정 및 鑑定의 의뢰</p> <p>4. 被陳情人 또는 被陳情人의 소속 機關, 施設, 團體 등에 대한 關聯資料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p> <p>②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 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第1項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③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 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場所 기타 필요한 場所에서 關聯資料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實地調</p>	<p>제19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이나 출석요구와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기관, 시설, 단체에 대한 관계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의 진술청취는 실지조사 장소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p> <p>③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관계전문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p>査를 하게 할 수 있다.</p> <p>이 경우 委員會는 委員 또는 職員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陳情人, 참고인 또는 被陳情人의 陳述를 聽取하게 할 수 있다.</p> <p>④委員 또는 職員이 第1項第2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따라 被陳情人의 陳述를 聽取한 경우에는 刑事訴訟法 第147條 내지 第149條 및 第200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地調査를 하는 委員 또는 職員은 實地調査의 대상인 機關, 施設, 團體 등이나 그 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調査目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p> <p>⑥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110條 내지 第112條, 第129條 내지 第131條 및 第13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⑦第3項 및 第5項의 경우 당해 委員 또는 所屬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⑧委員會는 第1條第2號의 출석요구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議決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者에 대하여 지정한 場所까지 同行할것을 命命할 수 있다.</p> <p>⑨第8項의 同行命命을 함에는 委員會의 委員長이 同行命命狀을 발부한다.</p> <p>⑩第9項의 同行命命狀에는 대상자의 姓名, 住居, 同行命命을 하는 이유, 同行할 場所, 發付年月日,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執行하지 못하며 同行命命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同行命命을 받고 거부하면 過怠料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委員長이</p>	<p>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국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p> <p>제20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p>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p>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姓名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體格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住居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住居記載를 생략할 수 있다.</p> <p>①同行命令狀의 執行은 同行命令狀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p> <p>②同行命令狀은 委員會 事務局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도록 한다.</p> <p>③矯導所 또는 拘置所(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收監중인 대상자에 대한 同行命令狀의 執行은 委員會 事務局 所屬職員의 위임에 의하여 矯導官吏가 행한다.</p> <p>④현역 軍人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部隊長은 委員會 事務局 所屬職員의 同行命令狀 執行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p> <p>第23條 (調査의 기간) 委員會는 調査중인 事件에 대한 調査를 2002年 9月 16日까지 完了하여야 한다.</p> <p>第24條 (陳情의 棄却)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기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실이 아닌 경우</li> <li>2. 疑問死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3. 사실확인·救濟措置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措置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第24條의2 (眞相糾明 不能 決定) 委員會는 疑問死 事件이 民主化 運動 過程에서 發生한 것인지 與否나 公權力의 直·間接的인 行事に 의한 것인지 與否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眞相糾明 不能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p> <p>第25條 (告發 및 搜查依頼) ①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p>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p>고, 犯罪嫌疑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被告發人이 軍人 또는 軍務員인 경우에는 소속 軍 參謀總長에게 告發하여야 한다.</p> <p>②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면서 犯罪嫌疑에 대한 상당한 蓋然性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搜查機關으로 하여금 搜查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發 또는 搜查依頼를 받은 檢察總長, 소속 軍 參謀總長 또는 搜查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p> <p>다만, 필요한 措置가 委員會의 活動終了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告發 및 搜查依頼와 관련된 陳情事件의 陳情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p> <p>第26條 (救濟措置 등) 委員會는 疑問死 事件의 調査結果 民主化運動過程에서 公權力의 違法한 行사로 死亡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 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審議委員會에 審議를 요청하여야 한다.</p> <p>第27條 (決定등의 通告) 委員會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却下,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棄却,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頼를 한 경우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通告하여야 한다.</p> <p>第28條 (公務員등의 派遣)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所屬公務員의 派遣勤務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派遣要請을 받은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p>	<p>제18조(결정 등의 통지)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 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결정 등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진정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진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를 재접수·처리하여야 한다.</p>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p>業務遂行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派遣된 公務員은 그 소속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독립하여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을 派遣한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委員會에 派遣된 者에 대하여 人事上 불리한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29條 (委員·證人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委員·職員 또는 鑑定人에 대하여 暴行 또는 脅迫하거나 委員 또는 職員에 대하여 業務上의 行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職을 사퇴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委員 또는 職員의 業務遂行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p> <p>②누구든지 疑問死 사건의 調査와 관련하여 情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解雇, 停職, 減俸, 轉補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p> <p>③委員會는 疑問死 사건의 證人이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資料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委員會는 疑問死 사건의 眞相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者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30條 (보고 등) ①委員會는 疑問死 사건의 調査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大統領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眞相 등에 관하여는 公表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p>	<p>제21조(증인 등의 보호) ①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위원회는 위원·증인·참고인이 의문사 사건의  관련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2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보상금액·보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제23조(보고 등) ①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났을 경우 1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②개별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공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p>1. 疑問死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國家가 하여야 할 措置</p> <p>2. 調査結果 眞相이 밝혀지지 않은 疑問死 사건과 그 被害者에 대하여 國家가 하여야 할 措置</p> <p>3. 疑問死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國家가 하여야 할 措置</p> <p>③委員會는 第1項의 보고서를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의 安全保障, 관계인의 名譽 또는 私生活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法律에 의하여 公開가 제한되는 사항은 公開하지 않을 수 있다.</p> <p>第30條의2 (調査報告書의 發刊) 위원회는 제30조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 報告후 5월 이내에 위원회의 活動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p> <p>第31條 (公訴時效의 停止 등) ①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調査가 開始된 때부터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時까지 調査對象 사건과  관련된 公訴時效의 進行은 停止된다.</p> <p>② 委員會가 告發 또는 搜查依頼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檢事 또는 檢察官이 不起訴 또는 不立件하는 경우 그 決定文의 이유에서 실제 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p> <p>第32條 (裁定申請에 관한 特例) ①委員會는 檢事 또는 檢察官으로부터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檢事 소속의 高等檢察廳이나 그 檢察官 소속의 高等檢察部에 대응하는 高等法院 또는 高等軍事法院에 그 當否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訴訟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委員會 活動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陳情人이 제1항의 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裁定申請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裁定申請에 관한 절차의 進行</p>	<p>③법 제3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문사 사건의 진상</li> <li>2. 피해자의 피해상황</li> <li>3. 의문사 사건의 발생 원인</li> <li>4. 의문사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원인</li> <li>5. 의문사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li> <li>6. 유사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li> <li>7. 기타 위원회에서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li> </ol> <p>④국제인권관련 協약의 規定에 따라 국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의문사 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의문사 조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p>제2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27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活動종료후 3월까지 존속한다.</p>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p>중에 委員會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刑事訴訟法 제262조제3항 및 軍事法院法 제304조제4항의 裁定申請人은 당해 사건의 陳情人으로 본다.</p> <p>第33條 (刑의 減免) 疑問死와 관련하여 罪를 범한 者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p> <p>第3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第29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鑑定人을 暴行 또는 협박한 者</p> <p>2. 第29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鑑定人에 대하여 그 業務上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職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暴行 또는 협박한 者</p> <p>3. 第29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僞計로써 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鑑定人의 業務遂行을 방해한 者</p> <p>第35條 (罰則)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36條 (罰則)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委員 등의 資格을 사칭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百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37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1.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疑問死真相糾明委員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p> <p>2. 正當한 이유없이 第22條第1項第4號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p> <p>3. 正當한 이유없이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實地調査를 거부·방해·기피한 者</p>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p>4. 正當한 이유없이 第22條第8項의 同行命令을 거부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同行命令狀의 執行을 방해하도록 한 者</p> <p>第37條의2 (過怠料 賦課權者 및 不服節次) ①제37조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위원장이 부과한다.</p> <p>② 위원장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過怠料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재판을 한다.</p> <p>⑤ 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p> <p>⑥ 위원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p> <p>第38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公務員이 아닌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p> <p>이 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p>附 則&lt;2001.7.24 法6,490&gt;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p> <p>附 則&lt;2002.3.25 法6,670&gt; ①(시행일)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조사기간이 滿了된 事件에 대한 特例) 이 법 施行前에 調査其間이 滿了된 事件으로서 調査가 完了되지 아니한 事件은 調査중인 事件으로 보아 제23조의 改正規定을 適用한다.</p>	<p>②(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별표의 정원(2급 1, 3급 또는 4급 3, 4급 2, 4급 또는 5급 1, 5급 1, 6급 1, 기능직 10)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별 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 공무원정원표(시행령 제12조관련)**

총 계	23
정무직 계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장관급)	1
별정직 계	3
상임위원(1급상당)	2
비 서(6급상당)	1
일반직 계	9
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검사 또는 별정직(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검찰수사서기관·총경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영관급 장교 또는 별정직(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1
기능직 계	10
기능10등급(운전원)	3
기능10등급(사무원)	7

※ 비교 : 조사1과장·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을 각각 검사·총경 및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국방부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파견받아 보직한다.



메 모

(1998년 12월 25일) (1998년 12월 25일) (1998년 12월 25일)

1	1	1
2	2	2
3	3	3
4	4	4
5	5	5
6	6	6
7	7	7
8	8	8
9	9	9
10	10	10
11	11	11
12	12	12
13	13	13
14	14	14
15	15	15
16	16	16
17	17	17
18	18	18
19	19	19
20	20	20
21	21	21
22	22	22
23	23	23
24	24	24
25	25	25
26	26	26
27	27	27
28	28	28
29	29	29
30	30	30
31	31	31
32	32	32
33	33	33
34	34	34
35	35	35
36	36	36
37	37	37
38	38	38
39	39	39
40	40	40
41	41	41
42	42	42
43	43	43
44	44	44
45	45	45
46	46	46
47	47	47
48	48	48
49	49	49
50	50	50
51	51	51
52	52	52
53	53	53
54	54	54
55	55	55
56	56	56
57	57	57
58	58	58
59	59	59
60	60	60
61	61	61
62	62	62
63	63	63
64	64	64
65	65	65
66	66	66
67	67	67
68	68	68
69	69	69
70	70	70
71	71	71
72	72	72
73	73	73
74	74	74
75	75	75
76	76	76
77	77	77
78	78	78
79	79	79
80	80	80
81	81	81
82	82	82
83	83	83
84	84	84
85	85	85
86	86	86
87	87	87
88	88	88
89	89	89
90	90	90
91	91	91
92	92	92
93	93	93
94	94	94
95	95	95
96	96	96
97	97	97
98	98	98
99	99	99
100	100	100

메 모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의 배경과 한계

안병욱(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민주화운동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오랜 기간 전개되었다. 장기간 투쟁하는 과정에서 폭압적인 권력의 조직적이고 고도화된 탄압에 의해 수많은 희생이 야기되었다. 그 희생은 4.19나 5.18 항쟁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은밀히 자행되었다. 희생이 발생한 후 관계기관들은 줄곧 막강한 통제력을 이용해서 폭력살인의 실상을 교묘하게 은폐해 왔다.

지난 역사에서 독재권력을 타도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한 과정은 극적으로 전개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급격한 세력교체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화의 과정은 선거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큰 파동이나 사회적 혼란을 겪지 않고 민주적 사회전환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면에 독재정권 하에서 조성되었던 부정적인 요소들도 그대로 온존되는 결과를 낳았다. 군사정권하의 기득권층은 새로운 정권 하에서도 그대로 권력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군사정권을 지탱해 주었던 제도적 장치들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민주화의 후속과제들이 연이어 추진되지 못하고 차단되었다. 결과적으로 고위 정치인들만 교체되는 제한적인 민주화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민주화의 과제는 여전히 민중의 요구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폭력정권이 붕괴된 이후에도 사회의 각분야에서 예전과 같은 적극적 운동을 필요로 했다. 다만 과거처럼 총체적인 반정부와 반체제의 구호는 사라지고 그 대신 세분화된 목표와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 새로운 집권층에게 가장 큰 난제는 과거 민주화과정에서 희생되었던 인사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명예회복의 문제였다. 4.19나 5.18 희생자들은 그 항쟁시기에 그 항쟁지역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희생자로서의 요건은 충분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 희생자들은 공권력이 고도의 기만책으로 희생의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해 온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였는데 만일 그 폭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이는 거꾸로 민주화운동을 오히려 촉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 경우 관계자들은 그에 따른 흑독한 문책을 면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기관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은폐공작을 자행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은 박종철열사 죽음의 실체가 밝혀지는 과정을 상기해 본다면 명백



해 진다. 이런 특징을 갖는 의문사로 불리는 희생자들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과거 독재정권의 기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권담당자에게는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과거 의문의 희생자들은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결과만으로 진실의 규명이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정부 하에서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점차 멀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곧 치열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는 희생자들의 희생을 적극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여론을 모으고 투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었다. 반면에 정권교체 이후는 기득권층과의 거래에 얽매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유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진상규명법 제정은 새로운 투쟁이 되었고 그 싸움은 과거 독재정권을 상대했을 때보다 더 힘든 과정이기도 했다. 비록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얻어 낼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정치적 타협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정부내 제도로서 위원회의 기능은 진상규명을 위해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었다. 위원들의 자격을 규정하고 선임할 때도 수사나 조사의 필요성보다는 배심원 같은 평결을 우선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에 기초하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심의를 요구한 것이다. 법률적인 심판을 요구한 것은 명백히 아니다. 지난 과거의 어려운 유산을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화해하도록 하기 위한 통과의례적 조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는 증거조사와 판결까지를 함께 수행하는 준 사법적인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 결정하는 기능과도 구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문제점은 근래 시행된 이른바 옷로비사건이나 조폐공사 파업유도문제를 수사한 특별검사제와 비교하는데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특검제의 대상이 된 사건들보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들은 모두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다. 전부가 사람의 목숨이 희생된 문제들이며 오래전 발생하여 증거들이 남아있기 어렵고 무엇보다 증거 조작과 진실은폐를 조직적으로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이다. 더욱이 특검은 수사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본 위원회는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한 특검마저도 사실규명에 끝내 실패하고 말았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본 위원회의 한계는 명백해지는 것이다.

이런 한계는 결국 위원회의 기능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곧 위원회의 탐문



조사로 어느 정도 규명이 가능한 부분은 희생자의 민주화운동 참여 여부나 혹은 자살, 사고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다. 막상 공권력의 은폐공작이나 사건조작이 행해진 경우라면 위원회의 조사활동으로 사실상 진상규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위원회 활동으로 밝혀지게 되는 부분은 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사건들만 추려내는 셈이 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공권력의 누명 벗기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중간평가, 그 성과와 과제

이은경(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무처장)

발제문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은 역사의 정언명령이며, 따라서 그 시작부터 역사적 큰 진전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렵게 유족들의 투쟁으로 법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권한과 시한, 인력 등의 미흡한 점들로 인해 진통을 겪었으나 새위원장의 선임으로 정상화된 만큼 촌분을 아껴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지적에 동의한다. 특히 '국가폭력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과 은폐의 메카니즘'이 여전히 작동되는 것을 큰문제로 지적한 것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그렇게 역사적 정언명령인 의문사 진상규명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까지 어떤 문제들이 노정되었고, 이후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구체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냉정히 짚어보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발제문에서 다룬 커다란 함의를 전제하고 구체적으로 그간 위원회 활동의 성과가 무엇이며 그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제기하고, 이후 전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고민을 제기하고자 한다.

### 1. 의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그 태생적 한계에 대한 태도에 대한 평가

그간 의문사 진상규명활동이 진통을 거듭하고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무엇보다 위원회가 그 태생적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에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활동의 태생적 한계는 이것이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과 완전히 단절한 민주정부에 의해 위에서부터 위력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유가족들과 운동세력들의 처절한 투쟁에 의해 밑으로부터 강제된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의문사특별법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실제 공권력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수사권 등 필요한 권한은 수구세력의 반발에 의해 다 빠져버림으로써 이빨빠진 호랑이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이런 태생적 한계는 발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제정과정 및 이후 위원회 구성 등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제는 의문사위원회가 이러한 태생적 한계에 안주하려고 하였는가 아니면 그 태생적 한계를 적극 드러내고 극복하려는 태도를 가져왔는가에 있다. 그간 유가족 및 사회단체와 위원회의 갈등관계는 기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승규



전위원장 체제하의 위원회는 초반부터 이미 태생적 한계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법개정이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자신들의 진의 여부와는 다르게 의문사 진상규명기구로서의 본연의 임무가 전도되어 오히려 의문사청산기구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불신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 2.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과정에서 드러난 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따라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활동 속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생적 한계를 곳곳에서 드러냈으며, 그로 인해 한편으로는 유가족 및 사회단체와의 갈등, 또 한편으로는 피진정기관인 공권력과의 대립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외부적 대립갈등은 그대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내부의 대립갈등으로 현상화되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단의 교체와 내부 활동기조의 쇄신 등 변화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토론자는 이러한 쇄신이전을 1기 위원회라 하고, 쇄신이후를 2기 위원회라 함으로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특히 위원회 활동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탓에 불가피하게 법적 한계(권한, 시효, 사면권, 위원회 자격 및 구조 등)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위원회의 활동기조문제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음을 밝힌다.

### 1) 의문사진상규명을 일체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진상규명으로 확장해야

그간 의문사진상규명활동의 성과는 무엇보다 의문사진상규명이 단순히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당사자문제가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켰다는 점이다. 이점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과거 정권하의 인권침해를 개별사안으로 또는 이미 지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그 원인을 찾아 재발을 막아야하는 중대한 현재적 인권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과거청산 국민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점에서 아직 의문사진상규명활동은 커다란 자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비록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실종사건 및 전향공작 및 삼청사건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한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 개입여부를 조사하는데 투여할 시간도 부족한데 죽음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의문사가 아니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민주화운동관련성이 없거나, 또는 의문사의외의 불법체포



및 감금, 고문, 투옥 등 다양한 유형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후 과제로 남기고 있다.

##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과거청산 기조의 통일성 확보되어야

그간 1기 위원회는 과거청산 차원에서 진상규명한다는 공식방침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사건의 조사를 직접 지휘하는 상임단 또한 이러한 위원회방침에 의거하여 개별사건 조사방침을 명시적으로 분명히 설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개별사건의 조사는 해당 상임위원 및 조사관들의 자의적 인식에 맡겨짐으로써 상당수 직접사인규명에 집착하는 근시안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는 위원회내의 파견공무원과 민간조사관들의 대립갈등 그리고 유가족 및 사회단체와 위원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다.

최근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 진상규명의 범위를 단순히 죽음이 발생한 직접적 사인규명차원을 넘어 그 죽음을 발생시킨 권위주의적 정권의 명령, 탄압구조, 정책, 법, 관행 그리고 지금껏 의문사로 의혹을 불켜 온 죽음이후의 은폐 및 탄압행위 및 시스템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의문사진상규명의 위상을 과거청산차원으로 천명한 점은 성과로 인정된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피진정기관 파견자까지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인한 상당한 내부 인식차이가 있으며, 아직 위원회의 운영기조가 전 조사관에게까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원회가 계속 내부 쇄신을 통해 기조의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할 과제이다.

##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피해자관점주의 보다 강화되어야

처음부터 위원회는 피해자관점에 서는 문제와 공정성 및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를 둘러싸고 반목과 대립을 거듭해왔다. 심지어 유가족들을 단순한 민원인으로 보고, 피진정기관과 대립하는 이해집단으로 간주하면서 양쪽의 입장을 공정히 평가하는 중간자로서의 관점을 주장하며 너무 유가족들에 의해 끌려다닌다는 반발도 심하였다. 거꾸로 오랫동안 수차례 국가기관인 검찰 및 국정조사 등에서 의혹없음으로 결론을 냈음에도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정면에서 제기해온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투쟁으로 쟁취한 의문사위원회도 자신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고 피진정기관의 위증이나 거짓을 용인하는 또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군림하려 든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극대화되어 갔다. 결국 작년 12월 위원회의 농성투쟁에서 유가족들은 자신들을 동반자관계로 해줄 것과 철저히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에 서서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2기 위원회는 피해자인 유가족의 입장에 서서 조사하며, 유족의 의혹에 대한 입증책임이 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 온 국가기관들에 비하면 팔목상대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여전히 2기 위원회도 사건조사를 마치고 최종판단하기 전에 9인 위원 전체 앞에서 유가족들이 소명할 수 있는 최후진술권을 거부하였다. 즉 최종 판단에 개입하려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위원들이 중대한 판단을 앞두고 유족들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사건의 조사에 충분하다고 느끼는지, 결과에 대한 마지막 소견을 듣는 것이 만일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진정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보다 철저히 피해자관점에 서야 한다.

그리고 진정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의 공권력의 본질과 행태, 그리고 그 시기의 사회적 메카니즘을 정확히 인식는데 있다. 바로 이점에서 위원자격이나 조사관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와 불만이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바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진정 피해자관점에 서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의식 및 역사의식을 올바르게 확보하고 실천하는데 달려 있다. 보완책으로 이런 사회의식 및 역사의식을 가진 역량들을 자문위원으로 결집하여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모양 갖추기에 국한시킨 오류도 있었다. 위원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4) 피진정기관을 조사대상으로 관점 전환 시급

현재 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의문사 사건의 상당부분은 이미 몇 차례 과거 국가기관(검찰, 국정조사 등)에서 조사하여 '의문사가 아님'을 소명해 온 사건들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악행에 대한 '은폐가 진행중'인 사건들이다. 따라서 진상규명의 성과와 한계는 태반이 피진정기관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조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는 이를 위한 강제수사권도 없다. 피진정기관이 협조하지 않는 한 강제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없고 허위진술이나 위증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상황이다.

그간 1기 위원회는 이에 대해 '목수가 연장 탓만 할 수는 없다'는 태도였다. 오히려 피진정기관이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두둔까지 하여 조사관들 및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기관의 비협조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과태료 및 업무방해 등의 최소한의 권한행사도 한번도 하지 않고 쉬쉬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몇 개의 사건에서는 진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 및 기무사, 경찰 등 최소한의 자료협조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조건에서도 조사관들은 치밀함과 집요함으로 주요자료들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이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주요자료 및 피진정기관의 유력 증인들에 대한 조사는 담보상태이다.

우리는 위원회가 피진정기관을 협조를 구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볼 시점은 이미 넘어섰다고 본다. 이제는 그들을 명확히 조사대상으로 놓고 이미 법적으로 확보된 권한을 최대한 행사(과태료 및 업무방해 고소 등)하면서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전 사회적 방도를 찾아야 한다. 피진정기관의 자료 미제출을 비롯한 비협조에 대해서 낱알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주요 참고인 및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여 사회적 공론화가 활기차게 일어나야 한다. 만일 여전히 위원회가 피진정기관을 협조의 대상으로 놓고,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비협조를 어쩔수 없다고 체념한다면 진상규명위원회는 오히려 과거 공권력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공범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 5) 의문사진상규명활동의 공론화 및 사회화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

그 동안 의문사진상규명활동이 이만큼이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었던 점에서 위원회가 기여한 바는 대단히 크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태생적 한계와 법적 권한의 한계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성과도 사회적 공분과 여론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난 1기 위원회는 조사기구로 자신을 한정짓고 국가기관이라는 합법적인 틀에 안주하여 사회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전 국민적 참여를 조직하는 것을 운동적 방식이라고 기피하여 왔다. 따라서 작년 4월 대국민캠페인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렸으며, 연예인을 명예조사관으로 선임하고도 활용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대협 및 홍보팀을 축소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결코 단순 조사기구가 아니다. 오랫동안 은폐되고 묻혀져온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민적 참여를 조직하고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할 진실위원회인 것이다. 특히 '국민화합과 재발방지를 목적'(법 제1조)으로 한다면 과거청산이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전 사회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었을 때만이 의문사에 직접 개입하였거나 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들이 진실을 증언하고 양심선언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유가족들 외에 동일한 범주에서 공권력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증언이라도 적극 확보하여야 피진정기관 및 피진정인들의 거짓과 침묵을 넘어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설득, 청문회 등을 통한 공론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강집 녹화사업 피해자 증언 확보 캠페인 등 대대적인 국민참여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 6) 시간적 제약에 대한 조급성과 성과주의 한계 뛰어넘어야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차례의 법개정으로 올 9월 16일까지 연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수십년동안 은폐되고 몇차례 진실이 왜곡된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더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진정기관이 철저히 협조하지 않고 있고, 위원회의 권한도 형편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간 1기 위원회는 주어진 시간 내에 기각 또는 인정(인용)이라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압박증을 공공연히 드러냈으며, 역으로 일부 유가족 및 언론에서도 왜 지지부진하냐고 위원회를 힐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진상규명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진실에의 근접성을 내용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참고인 및 증인을 몇 명이나 불렀는지 등을 계량화하는 성과주의를 곳곳에서 드러냈다.

그 동안 위원회와 유가족들의 첨예한 대립의 핵심은 '철저히 진상규명이 안된 상태에서의 조기종결'이었다. 당연히 신중한 판단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흑간에서는 유족들이 주장한 결과가 안나오자 반발하였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 발제자의 고언대로 유족 및 추모단체가 위원회의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솔직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시간에 쫓겨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심지어는 유족의 의혹을 근거없다고 무시하면서 종결을 서두른다면 누가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 유족 측의 참고인과 피진정기관 측의 증인과의 진술이 상이하고, 누가 옳은지를 판단할 객관적 증거가 모두 폐기되었다고 내놓지 않을 때 위원회는 어떻게 진실을 가릴 것인가?

이번 3차 법개정에 의해 위원회는 기각, 인용 외 진상규명불능이라는 최종판단을 할 수 있다. 주어진 기간동안 철저히 진상규명이 되었다고 유가족 및 모두가 인정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진상규명 불능=조사종단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 3. 중단없는 진상규명- 위원회 이후 대안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한 중간점검을 하였다. 그러나 그 위원회의 조사기간 또한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위원회 이후에도 남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 현재 위원회가 의문사진상규명의 종착역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 1) 위원회의 활동종료 이후 대책 공론화 시급

그간 위원회의 활동종료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공론화가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간간히 나온 의견들이 없지는 않다.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자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 왜냐면 국가인권위는 현재 진행되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특히 사회적 차별문제에 대한 구제 및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연의 소임인 바, 과거청산 차원의 진상규명을 포괄토록하는 것은 인권위원회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인권위법 제정과정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었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 더 작은 만큼 절대적 시간의 한계만이 장애가 되는 사건들 외에는 실제 국가인권위로 이관하여도 더 조사가 진전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두 번째 의견은 차제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상설로 전화하자는 의견이다. 특별법과 특별위원회라는 한계를 넘어 진상규명이라는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조사권한도 더 강화해주되, 일정 조직의 규모는 축소하여 시간적 제약 및 권한의 장애를 넘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역시 반대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위원회 내부에서의 반대와 피진정기관들의 반발이 더 큰 듯하다. 한정된 시간만 잘 넘기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진정기관(자)들의 반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위원회 내부의 반대는 아직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다. 물론 유가족들은 법제정당시부터 시간적 제약없이 충분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던 만큼 가장 많이 지지하는 의견이다.

그 외에 구체적 대안없이 위원회 종료 후 아예 중단하였다가 과거청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조건이 되면 다시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놔두자는 의견들도 있다.



## 2)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 외 일체의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시급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미 법제정과정에서도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모두를 진상규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문사 진상규명이 민주화운동관련한 의문사로 제한된 것은 그만큼 아직 사회가 과거청산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만큼 조건이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과거청산이 시급함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 이상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 이외 반인권적 국가범죄 일체에 대한 진상규명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소위 군의문사라고 불리는 사건들, 사법사살이라고 불리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 불법체포와 감금, 고문, 투옥 그리고 그외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다양한 유형의 국가범죄 일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대폭 개정하여 위에서 제기한 일체의 생명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기구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전화시켜 과거청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3) 고소, 고발 이후 남는 문제, 그리고 공소시효 중지 법제화

현재 특별법상으로 위원회는 조사결과, 반성하지 않는 피진정기관 및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단지 고소, 고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고소, 고발한 다음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하면 위원회의 진상규명은 무위로 돌아가게 되며, 오히려 자칫 의문사위원회에서 복무하였던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조차 있다. 따라서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의거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어렵게 밝혀낸 진실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인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문제는 얼마나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여 법제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가이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유효성 여부를 떠나 조사 종결한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고소, 고발하여야 한다.



#### 4) 의문사유가족 및 사회적 투쟁에 대한 명예회복문제

마지막으로 특별법에 의하며 그간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하였던 유가족들의 피해사례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회적 조치에 대한 권고를 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일 뿐이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법에 명백히 담긴 강제조항도 무시하는 풍토에서는 이는 어찌보면 보기좋은 떡일 뿐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유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죽음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든 그간 고통속에서 투쟁해왔던 유가족들은 모두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 명예회복 조치와 사회적 집단 보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불운이 없도록 의문사위령탑 및 추모공원, 기념관 등을 설치하여 이 사회가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토론문

김 철 흥(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 I

강 교수님의 글은 현재 강교수님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관련자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화운동 및 민주화운동관련자를 규정하는 법조문의 해석문제, 종기문제, 인과관계와 입증책임문제, 입법개정운동, 법의 성격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런 지적들은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들로 볼 때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발표 논문의 제목이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발표 부분이 이 법을 다루는데 할애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다소 경도 될지라도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어떻게 서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더 많은 시사점을 갖게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무래도 발표자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고, 실제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다.

강 교수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성과에 대해 평가하면서, 업무처리 지연뿐만 아니라 당초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패의 외재적 요인으로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민주화능력의 한계, 내재적 요인으로 민주세력 및 양 위원회의 활동에서 찾고 있다.

강 교수의 핵심적 지적은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개념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민주운동보상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된 사용자 폭력에 대한 저항, 그리고 분단과 계급문제와 연관된 통일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 등이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개념 해석에서 항거의지를 강조하는 ‘엄격주의적 해석’에 충실하면서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축소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강 교수가 제시한 대안은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관련자 개념을 보다 확대 해석하는 것이 ‘민주주의발전과 국민화합’이라는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목적에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운동보상법



을 민주화운동 과정의 유공을 밝히는 '민주화운동유공자법'보다는 '민주화운동피해보상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에 대한 항거(개인적인 이해타산 때문에 벌어진 투쟁은 제외)와 우리 일상적 삶 곳곳(학교, 교회, 회사, 가정 등)에서도 작동한다는 푸코의 권력론에 근거하여 일상적 삶에 내재해 있는 권위주의적 권력에 대한 저항행위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포함시키야 한다고 주장(권력 규정의 포괄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주화운동보상법이나 의문사법이 민주화의 완성시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민주화의 도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민주화와 전혀 관계없이 국가권력의 위법적 행사로 희생당한 사람들(예: 막거리보안법 피해자, 취중발언 긴급조치 위반자 등)까지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적극적 도덕성)는 민주화운동관련자 개념의 최광의적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개념의 확대를 위해 상당한 인과관계 및 신청인 입증책임론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넘어 권력자의 전체적 반성 도출과 과거청산까지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개념의 확대해석을 위한 방안으로 민주화보상법 및 의문사법의 성격을 준헌법적 성격으로 이해하고 헌법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권위주의적 통치 시대의 습관, 논리에 묶여 있는 법률가들의 해석보다는 "법률 논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법률에 기대하는 그런 상식에 입각한 해석"인 "일반국민들의 해석의 관점("국민주권적 해석")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강 교수는 항거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처리의 명확성은 확보하였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일방적 피해는 보상법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인해 양 위원회의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갈등의 이유를 민주화운동관련자 개념에 대한 해석 방식에서 찾고 있다.

## II

강 교수가 발표에서 지적한 논지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것들은 그 동안 많은 논란과 토론의 쟁점들이 되었던 것들이다. 잘 알고 계시듯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에 명확하게 포함되는 것들을 먼저 심사했던 것도 그 이유이며, 민주화운동관련자 여부 심사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일년 여 이상 걸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어쨌든 현재까지 민주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1차 신청사안 8,539건(보상 944건, 명예회복 7,595건)중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서 74.9%인 6,392건(2002. 5. 15. 현재)을,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61.6%(5,260건)를 처리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사건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수준



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토론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견과 무관한 개인적 의견임을 먼저 밝혀둔다.

첫째, DJP연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한 현 정부의 한계 및 집권여당이지만 소수당인 현재 한국 정치세력들의 역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전교조 및 동의대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보수적 주장이 온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개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나 직접적 피해가 없어 혹은 그 근거가 없어 본 법의 대상에서 배제된 다수 국민들의 비판(동의대의 경우 3당이 반대)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양 위원회는 민주적 사회세력의 엄호는 받지 못한 채, 권위주의적 사회의 잔재로부터 대규모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화운동관련자 개념의 확대와 궁극적으로 과거청산은 지향되어야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경로에는 선행되어야 할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한다.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공고화)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양시론적 입장에서 제로섬적인 과거청산의 문제는 다음 단계로 넘기고, 지금은 더디지만 민주화운동관련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대한 사회적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동의를 확장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민주화운동관련자 개념 확대론의 시기 적절성 문제이다. 발표자의 논문은 두 위원회가 심의기준을 결정했던 초기단계에서는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60%이상을 처리한 현재 상황에서, 그 동안 적용기준을 폐기하고 뒤엎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결정과 기준은 한국사회의 정치세력 및 위원회 내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는 해석의 방향 제시가 아니라 항거의지가 담지된 민주화운동관련자 개념을 중심에 놓고, 엄격한 해석의 일관성, 신뢰성, 타당성 획득방안의 강구가 더 필요한 때이다. 다양한 정치성향을 가진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고, 훗날 부당한 보상이 되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새로운 법적·논리적 근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화세력'만' 이해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항거의지 등 항거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면 더 유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권력규정의 포괄적 이해와 민주운동관련자 개념의 확장문제이다. 권위주의적 정권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모든 피해를 민주화운동관련자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항거'라는 저항권적 개념이 퇴색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연, 지연, 종교, 성차별 등등에 대한 저항까지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되어, 인권법 등 다른 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익집단의 갈등까지 민주화운동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민주화운동



개념은 더욱 모호해질 것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통치권력에 의한 일방적 피해를 민주화운동관련자법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한 일방적 피해는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배상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넷째, 해석의 기준으로 제시한 '국민주권적 해석'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이다. 권위주의적 통치 시대의 습관, 논리에 묶여 있는 법률가들의 해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일반국민이 바라보는 관점은 각자의 당파성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국민주권적 해석'에 대한 동의가 존재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권위주의적 통치의 영향력이 여전히 관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국민들의 해석관점을 적용할 경우, 역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 동의대 및 전교조 사건에 대한 민주화운동 결정 이후 전개된 파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국민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해 전달된 일방적 정보에 의거하여 사건을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정보에 포섭된 일반국민들이 지향하는 국민주권적 해석이라면, 이번 결정은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위원회가 너무 급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 국민이 인식하는 민주화 개념에는 70년대, 80년대 운동만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여부는 권위주의적 통치세력이나 민주화운동세력 그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이끌려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만이 양 위원회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주권적 해석'이라는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여부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섯째, 문제해결방식으로 제시한 것이 법 해석적 관점만을 중시하고, 입법적 해결방식 등 다른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념 해석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법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있지만, "본 위원회 안"과 "계승연대 안"에 대한 병렬적 소개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법 개정사항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입법적 방식을 고려하고, 법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해 주었으면 더 유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강 교수는 보상법과 의문사법을 준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해석을 주장하지만, 이것이 일반국민에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이런 주장은 국민의 반감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동의대 및 전교조 사건에서 보듯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입법적 근거가 없는 헌법적 해석 주장은 오히려 법치질서 파괴라는 비판을 받고, 피해보상이라는 본 위원회의 최소 활동마저 담보상태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법 감정, 상식수준, 국민의 공감성 등을 고려하여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쟁점사건의 경우 기존의 정치·사회·문화 논리를 법적 논리로 전환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공개토론회 토론요지

조남현(자유시민연대 대변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발제자가 지적했듯 '어디까지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를 시한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발제자는 민주화운동을 광의로 해석, 국가권력과 관련이 없는 것까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듯하다. 이를테면 '사립학교재단의 비리와 싸운 학생들의 학내운동은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다. 과연 이런 해석이 정당할까?'라는 의문 제기 이어 '권력은 비단 국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침투되어 있다는 푸코의 사회이론을 생각해본다면 외부인의 눈으로는 명분 없는 싸움 가운데서도 지난한 부패권력과 싸움을 벌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 경우 기존 질서에 저항한 것은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할 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화운동 보상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 법의 취지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당사자나 그 유족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줌으로써 생활안정을 꾀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은 과연 민주화운동을 보상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보상하겠다는 것은 발상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은 사회의 존경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는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유족이 피해를 구제받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피해를 구제받는 길은 있다.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토록 해야 하고, 이는 별도의 특별법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는 점이다. 또 '배상'의 이유가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이기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다고 해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은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운동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관해 또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해석이 민주주의 자체와 모순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전교조 해직교사들과 동의대 사건 연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이 논란이 됨은 물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결정이 민주주의 자체와 모순을 낳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목적의 정당성 못지 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수단의 정당성을 중시한다. 아무리 올바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단의 정당성을 결여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는 '민주화' 또는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법치질서를 유린하는가 하면 폭력마저 정당화시키는 일이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정의'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가치판단이라는 사실이다. 극단적인 경우 '나'의 정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요구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법치질서다. '정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의대 사건 연루자들이나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경우 실정법을 어겼음은 물론 폭력(그것도 인명살상을 낳은)과 관련되어 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면 이들을 처벌한 법은 어찌 되는 것인가? 이들의 행위를 민주화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면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는 반민주 집단인가?

발제자는 민주화보상법의 종기(終期)를 ① 현행 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시점까지(87년 10월29일) ② 문민정부 수립 이전까지(93년 2월) ③ 국민정부 수립 이전까지(98년 2월) ④ <의문사법>, <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된 때까지(2000년 1월12일) ⑤ 위 법이 신청기한으로 잡는 때까지 등 5가지 의견을 제시하며, ⑤가 결론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발제자는 근거로 '권위주의 정권은 6월 항쟁을 통해서 한풀 꺾이고, 문민정부와 국민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약화되고 있을지언정 그 잔재는 여전히 위력적으로 이 정권과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민주화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말해 민주화의 완성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종기(終期)는 앞으로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다. 설혹 민주화의 완성단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뿐 아니라 노태우 정부는 저



항의 대상인가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 직선제 쟁취를 통해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을 저항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헌법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대선은 김영삼 전대통령과 김대중 현 대통령도 참여한 선거다. 발제자는 ①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지만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시기(始期)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안을 발의한 69년 8월7일을 시기(始期)로 잡은 근거가 무엇인가? 이 경우, 발제자가 지적했듯, 69년 8월9일 전에 발생한 3선개헌 움직임에 대한 저항은 물론 그 이전 시기의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낳는다.

이처럼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개념과 해석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화운동을 보상의 대상으로 삼은 발상부터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의문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검찰 등에만 맡긴다고 할 때 규명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별도의 기구가 이를 전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화운동을 보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공권력의 위법한 집행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면, 그것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든 아니든,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아내야 할 사안이지 '보상'토록 한 것은 사문화된 법이 아닌 현행법과의 모순을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제자는 이 법을 헌법에 준하는 법률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헌법에 준하는 법률이라는 사실 또한 문제다. 헌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률이라는 것은 이 법률이 다른 현행법을 사문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인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심의위 9인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 해직교사와 동의대 사건 연루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듯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가 심의위 위원들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맡기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 의문사 진상규명의 입증 책임과 재발 방지 측면

김두원(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

## 1. 의문사 진상규명의 입증 책임

### 1) 공정성

작은 소년에 불구한 다윗이 창과 방패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는 작은 돌이라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권력기관과 맞서야 하는 의문사 유가족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유가족은 그저 혈육을 잃은 애달픔밖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게임이 특별법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흡연에 의한 피해를 입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대한 담배회사와 맞서야 하는 작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 흡연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회사가 흡연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있으며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비록 적시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지 못하였어도 관계기관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인사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료가 폐기되었다, 보안상 비밀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기피하기보다는 진상규명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러한 이유가 타당한가를 협의하고 합의하여 신뢰관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은 권력기관이 또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축소한다고 여길 것이며,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조사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의문사 유가족은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으며,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관계기관에 있음을 명백히 합니다.

### 2) 결자해지

뭇은 사람이 매듭을 푼다라는 뜻으로 우리 모두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의문사는 당한 사람의 운명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 국가폭력으로부터 선택된 것이다라는



점에서 국가는 과거에 묶은 매듭을 지금은 풀어야 할 때입니다.

의문사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의 독재권력이 독립투쟁을 했던 반독재 투쟁인사를,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던 젊은이들을 불법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던 불행한 사건입니다. 불행했던 일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권력기관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뜻과는 달리 권력욕에 빠진 몇몇 정치군인들의 거부하기 힘든 명령으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강요받고 마음의 짐을 앓고 살아온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과거처럼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거짓말은 더 이상 발 부칠 곳이 없습니다. 매듭은 묶어놓고 유가족에게 힘이 있으면 풀어보라고 뻔뻔함을 보인다면 진정으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사회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작년 4월에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제는 짐을 벗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관계기관과 원하지 않게 불행한 사건에 가담되었던 사람 모두 자신이 갖고있고 알고있는 사실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국민들과 사회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힘으로서 가족에게 진심으로 존경받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정부기관과 공무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2. 재발 방지

### 1) 오늘의 문제

의문사 문제가 단지 유가족의 문제이며 과거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리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유가족은 사라질 것이며 문제도 아울러 사라질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작년 5월에 서울역 광장에서 법개정 서명 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에서 젊은이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여러분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권유하자 젊은 부인이 그것도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기 엄마가 지나가다가 되돌아와서까지 서명을 해주던 모습을 보았을 때 의문사에 대한 걱정은 저 젊은 아기 엄마도 그냥 놓아주지를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 문제는 과거를 치유하는 문제가 아닌 의문사 재발 방지를 통하여 오늘의 걱정을 해결하는 문제로 또 자식을 마음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문제입니다.

### 2) 제도적 장치

서울역 광장에서 젊은 엄마에게 했던 말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부정한 권력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려야 합니다. 진상규명 위원회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기관의 사례를 직접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력이 누군가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 부당함을 온 국민이 함께 지적함으로써 관계기관이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은 이러한 불행한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더욱 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의문사를 그저 유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 국민에게 알리고 의문사가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였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려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문사 재발을 방지하여 그야말로 의문사는 유가족의 문제로 끝나야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모가 자식을 군에 보낼 때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는 필요합니다.

부정한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관계기관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도 역시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곱지 않은 눈총에서 벗어나 희망찬 국가의 앞날을 개척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기관 내부에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의 관행이 오늘에도 이어지는 것이 과연 조직의 앞날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들추어내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당한 일을 강요받지 않겠다는 양심 선언을 하고 가족과 국민들로부터 참된 지지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3. 결언

이제 우리 유가족은 화해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 이전의 단란했던 삶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밝히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합니다. 저 멀리 남아공에서 해냈던 일을 대한민국이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성찰에 의한 양심선언으로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민족의 앞날을 개척해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마지 않습니다.